

II. 정정보도청구사례

신뢰도가 높은 취재원을 대상으로 진실확인을 위해 노력했으며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15.자 판결 (2004가합20130)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박동영 부장판사)는 원고 대한민국(철도청)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철도청의 협조가 없는 상황 하에서 기사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실들의 진실 여부의 확인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기자는 고속철도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취재의 대상으로 삼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와 같은 취재원들이 고속철도의 기술이전 및 운행자문을 담당하는 자, 또는 고속철도의 시운전을 해본 자들 등이어서 철도청을 제외하고는 고속철도의 문제점이나 개통준비상황 등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들인 것으로 보여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 할 것이며, 기사 게재 당시 개통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대한민국(철도청)은 한국일보가 2004년 2월 21일자 A4면에 『고속철 4월 전면 운행은 무리』 제하의 기사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고속철도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총선을 대비하여 무리하게 개통을 서두르면서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4년 2월 2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4서울중재77)을 하

였으나,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20130 정정보도

원 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승 규

소송수행자 강 대 석, 김 시 주, 강 현 식

피 고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인 철

변 론 종 결 : 2004. 9. 24.

판 결 선 고 : 2004. 10. 15.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일간지 ‘한국일보’ 1면에 상자기사로 <별지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28급 활자로, 본문은 ‘한국일보’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하에 철도청을 두어 고속철도 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한국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고속철도를 2004. 4. 1. 개통하였는바, 고속철도는 시속 300km의 빠른 속도를 통하여 이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건설방침이 발표된 이후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개통을 앞두고 그러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다.

다. 피고 한국일보사 소속 기자인 소외 최○○은 2004. 1. 중순에서 하순경에 고속철도 개통에 대하여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무리하게 개통을 서두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취재를 한 후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한국일보사는 이를 2004. 2. 21.자 한국일보 A4면에 게재하였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는 “고속철 4월 전면 운행은 무리”를 큰 제목으로, “운전·정비등 실습경험 부족 ... 교통신호 시스템 아직 불안정”을 작은 제목으로 하여, 고속철도 기술이전과 운영자문을 담당하는 프랑스 기술진인 유코레일 관계자 및 고속철도를 시운전 중인 기관사들, 고속철도 노조 관계자로부터의 전언 형식으로, 철도청의 방침대로 개통과 동시에 고속열차 전 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할 경우 운전·정비기술 미숙련과 기존선로의 활용구간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는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우려되는바, 이에 유코레일사는 철도청에게 4월 1일 전면 개통은 무리이므로 운행 편수를 계획보다 줄여서 개통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잦은 시승행사로 교육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 및 4월 개통은 충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이고 있는바, 위 기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고속철도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충선을 대비하여 무리하게 개통을 서두르면서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안전한 운행을 생명으로 하는 고속철도의 운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 산하의 철도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고 또한 그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익성

당시 고속철도의 개통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고속철도가 운송수단으로서 담당하게 될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안전성은 다수의 국민들의 생명과 관계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고,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 취지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통일자를 너무 서두르거나 전면적으로 개통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주요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진실성 내지 상당성

기사에 적시된 구체적 사실을 보면, 고속철도에 운전·정비기술의 미숙련과 기존선로의 활용 구간이 늘어남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점이 우려되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속철도 기술이전과 운영자문을 담당하는 프랑스 기술자인 유코레일사가 철도청에게 4월 1일 전면 개통은 무리이므로 운행 편수를 줄여서 개통할 것을 요청하였고, 철도청은 홍보를 위하여 교육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잦은 시승행사를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무리한 개통은 총선에서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인바, 위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최○○ 기자는 고속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완벽하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철도청이 무리하게 전면 개통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혹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고,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직접 제보를 받기도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위한 취재를 시작한 사실, 최○○ 기자는 취재를 위하여 유코레일 관계자, 로템사, 로템사 노조관계자, 철도청 노조관계자, 고속철기관사 노조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였고, 그 취재원들은 대체로 고속철도 운행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운행시스템을 다루는 인력의 준비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4월 1일 개통에 맞추어 전 차량을 투입하기보다는 운행편수를 줄여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들은 그러한 취재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사실, 위 기자는 철도청의 해당 부서 담당자에 대하여 직접 취재를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그 이전부터 철도청이 위와 같은 직원들의 기자와의 개별 접촉을 금하면서 홍보실을 통하여 홍보성 기사만을 배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통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이 사건 보도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시도는 무의미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인 사실, 철도청은 실제로 보도 직후인 2004. 2. 23. 기존에 밝힌 운행회수인 하루 '164회에서 184회'를 '144회에서 164' 회로 감축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가 정작 개통일에는 '128회'로 이를 다시 감축하였던 사실, 고속철도 개통일에 대하여 2004. 4. 15. 이루어질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게 유리하도록 개통시기를 정하였다는 의혹이 야당 및 언론을 통하여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고, 2004. 1.경에는 실제로 철도청이 2004. 4. 30. 개통하기로 되어 있던 내부 계획을 변경하여 개통시기를 2004. 4. 1.로 앞당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인 철도청의 협조가 없는 상황 하에서 기사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실들의 진실여부의 확인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기자는 고속철도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취재의 대상으로 삼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와 같은 취재원

들이 고속철도의 기술이전 및 운행자문을 담당하는 자, 또는 고속철도의 시운전을 해본 자들 등이어서 철도청을 제외하고는 고속철도의 문제점이나 개통준비상황 등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들인 것으로 보여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 할 것이며, 기사 게재 당시 개통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적시된 구체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동 영

판사 민 성 철

판사 이 봉 수

〈별지 1, 2〉 생략 — 편집자 주

□

**방송이 특정인의 정치적 홍보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동기의 보도로서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당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2. 17.자 판결 (2004가합1998)

사실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2004년 12월 17일 전 ○○방송

사 대표이사 박〇〇가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의 일반대중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송법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는 방송이 특정인의 정치적 홍보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동기에서 보도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〇〇방송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〇〇방송 대표이사를 사직할 무렵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건은 원고의 암묵적인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문건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원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보도의 신속성의 요청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당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겨레가 2004년 2월 3일자 10면 『지역민방을 출마 디딤돌로?』 제하의 기사에서 “박〇〇 〇〇방송 회장이 2006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모 선거컨설팅업체의 ‘박〇〇을 위한 성공적인 이미지제고 계획(Successful Image Up Plan for PSE)’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바탕으로 영향력 있는 지역민방을 통한 장기 캠페인 등 방송을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원고는 방송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도 않고 〇〇방송노조의 기자회견에만 의존하여 마치 원고가 방송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듯이 묘사한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4년 2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4서울중재65)을 하였으며 중재결과 담당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1998 정정보도

원 고 : 박 〇 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중 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 병 일

피 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고 희 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 영 대

변론종결 : 2004. 11. 26.

판결선고 : 2004. 12. 17.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간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의 제10면 기사 게재부분 좌측 상단의 4각형 테두리 안에 별지 기재와 같이 그 위쪽에는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본문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는 정정보도내용을 본문 기사 활자 크기로 기재한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12.경부터 2004. 2. 23.까지 '○○방송 ○○티브(○○TV)'를 운영하는 소외 ○○○방송 주식회사(이하 '○○방송'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한겨레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나. 원고의 경력

원고는 ○○○방송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방송 대주주(26.7% 지분 소유)인 소외 주식회사 ○○○제당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02. 1.경부터 민주당 남동지구당 위원장이었으며, 2002. 6.경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02. 12.경 ○○○방송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원고는 ○○○방송 대표이사를 그만둘 무렵인 2004. 2. 20.경 열린우리당에 인천 서구 ○○○읍 지역구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낙천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

(1) 이 사건 문건의 작성 경위

소의 주식회사 모앤도의 사장인 소외 민○○는 직원인 소외 유○(2002년 선거당시 원고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일하였던 소외 유○○의 아들)로부터 원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8.경 이미지제고문건(을 제3호 증, Successful Image Up Plan for "PSE"-Personal Identity Program)(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유○에게 건네주었다. 이 사건 문건에는 2006년 인천시장선거 입후보를 전제로 원고의 정치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장기 계획과 세부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방송을 이용하여 원고를 홍보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

원고는 ○○방송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노조와 대립하여 오던 중 2003. 8.경 회사의 조직개편 등과 관련하여 대립이 심화되었고, 2003. 12.경에는 노조로부터 퇴진압박을 받았다.

그러던 중 노조위원장 소외 강○○과 노조사무처장 소외 김○○ 등은 2004. 1. 26.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화학 건물 11층에 있는 ○○방송 서울지부의 원고 사무실에서 이 사건 문건을 입수하여 복사한 후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피고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전송하였다. 피고 소속 기자인 소외 전○○는 2004. 1. 30. 강○○ 등 ○○방송노조원들로부터 '박○○ 회장의 OTV 사유화 음모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팩스로 전송받았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자신의 선거출마에 ○○방송을 활용하려 하며, 노조는 2004. 2. 2.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전○○는 즉각 취재에 착수하여 ○○방송노조원들, 원고 및 민○○와의 전화통화를 실시하였다. ○○방송노조는 2004. 2. 2. 예정된 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전○○는 노조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위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민○○를 인터뷰하였다.

(3) 기사의 게재

피고는 2004. 2. 3.자 한겨레신문 10면에 '지역민방을 출마 디딤돌로?'라는 주제목하에 '○○방송노조, 박○○회장 이미지 제고 문건 폭로, 장기캠페인·칼럼 집필 등 권유...“컨설팅사 작품”'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별지 2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 ○○방송 회장이 2006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방송을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 노조(위원장 강○○)는 2일 오전 서울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박 회장의 선거운동 방안을 담은 문건을 공개한 뒤 3일 오전 인천지검에 선거법·방송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박○○을 위한 성공적인 이미지제고 계획'(Successful Image Up Plan for 'PSE')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차기 인천시장 선거출마를 염두에 둔 기본 전략으로서…단계별 이미지 강화 및 인천시민의 잠재의식에 장기간에 걸쳐 호감도 및 선호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메이킹 차원에서의 마케팅 캠페인 전략안”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힌 뒤 3단계로 나뉘 박 회장의 선거전략을 짜고 있다. 문건은 1단계 주요 전개방안에서 “○○방송 등 영향력 있는 지역민방을 통한 장기 캠페인 전개”를 내걸고 있고 “‘아이러브인천’이라는 무료 일간지를 창간하고 박 회장이 고정칼럼을 집필해 인천사랑 실천의 주역임을 친근하면서 힘있게 지속적으로 암시한다”고 적고 있다. 2단계 세부 전개내용에서도 ○○방송이 주최하는 ‘아이러브 인천’ 콘서트를 열어 “박 회장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젊은층에 호감도 조성 가능한 기회로 삼는다”고 적은 뒤 3단계는 ‘충성도 제고 캠페인’ 계획을 세워놓았다. ‘○○○’라는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문건은 지난해 8월 작성된 것으로 표지에 나타나 있다. 박○○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문건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그 정치 컨설팅 업체가 내게서 선거기획을 따내기 위해 임의로 만든 계획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건을 만든 ‘○○○’의 민○○ 사장은 기자와 만나 “내게서 문건을 가져간 유아무개씨로부터 박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지난해 들었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문건은 내가 작성한 것이 맞으며 우리 회사에 잠시 직원으로 있던 유씨의 부탁으로 만들어줬으나 그 뒤 내용은 상세하게 보고받지 못하고 있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0월말 개인 사정으로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라. 관련사건

강○○ 등 ○○방송 노조원들은 2004. 2. 3.경 원고를 인천지방검찰청에 방송법 및 공직선거법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2004. 4. 30. 원고가 방송편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통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민○○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방송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도 않고 ○○방송노조의 기자회견에만 의존하여 마치 원고가 ○○방송을 선거출마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듯이 묘사한 이 사건 기사를 경솔히 피고가 발행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1 정정보도문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써 금 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출마를 전제로 ○○방송을 이용하여 원고의 정치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이 사건 문건을 자세히 요약하고 있는 바, 비록 이 사건 문건과 무관하다는 원고의 반론을 적시하기는 하였으나, 문건을 작성한 민○○와의 인터뷰 결과를 게재하여 문건이 원고에게 전달되었으리라는 강한 암시를 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였거나 ○○방송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위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족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추된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유무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자본과 경영진에 의한 방송 사영화를 경계함으로써 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기사의 취지는 원고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전에 원고, ○○방송 노조원들 및 민○○ 등 관련자들과의 수차례 전화통화와 인터뷰를 통해 충분한 조사 과정을 거쳤으므로 진실한 것일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기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다) 판단

1) 공익성 유무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건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지역의 유력한 공중파 방송인 '○○방송(○○TV)'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의 대표이사인 점, 원고는 인천시장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건이 발견된 장소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방송을 개인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다분한 점,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인 전○○와의 인터뷰시에도 정치적 포부를 숨기지 않은 점, 방송의 일반대중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송법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는 방송이 특정인의 정치적 홍보를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동기에서 보도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진실성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문건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던 점, ② 이 사건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03. 8.경인데, ○○방송 노조원들에게 발견된 시점은 2004. 1. 26.로서 작성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인 점, ③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전○○는 원고, 노조측 관계자들 및 민○○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취재과정에서 ㉠ 노조측 관계자들은 민○○가 '2003. 12. 30.께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박희장(원고)을 만났는데 박희장이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였고, 유○의 아버지 유○○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그로부터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말하였던 사실(실제로 노조와 유○○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취된 녹음테이프가 2004. 2. 7. 한국방송(KBS)의 시사 프로그램인 '미디어포커스'에 방영되었다), ㉡ 원고는 전○○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문건을 본 일도 없다며 이 사건 문건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선거출마의사를 묻자 '내가 2002년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여기서 그만두겠느냐, 2006년 선거에는 다시 나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출마의사를 밝혔던 사실, ㉢ ○○방송노조는 2004.

2. 2. 예정된 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전○○는 노조의 기자회견 후 민○○를 인터뷰하였고, 민○○는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유○○로부터 원고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방송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방송 대표이사를 사직할 무렵 열린우리당에 인천 서구 ○○읍 지역구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건은 원고의 암묵적인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문건이 민○○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원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보도의 신속성의 요청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당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 승 국

판사 민 소 영

판사 이 준 철

□